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国内事件

實用新案登錄無效

<大法院 第1部 判決>(1984. 11. 27)

事件番號: 84호 26

裁判長: 이 일 규

關與法官: 이 성 렬 · 전 상 석 · 이 회 창

1. 審判請求人(被上告人): 이 춘 석(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400) 외 1인

2. 被審判請求人(上告人): 백 광 육(서울시 도봉구 변동 148—406)

3. 原審決: 特許廳 1984. 1. 31字, 1982年 抗告審判(當) 第30號 審決

4. 事 文: 原審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

5. 理 由

上告 이유를 본다.

實用新案의 登錄要件을 정한 實用新案法 第5條第2項은 實用新案登錄 출원전에 그 考案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第1項 각호에 계기한 고안(實用新案登錄出願前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考案, 실용신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審判請求人의 이 사건 實用新案登錄 第18357號의 고안 목편으로 구성한 방석의 매듭용 개량주연 편목은 그 實用新案登錄 출원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고 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고안에 지나지 아니하며 공지 공용의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實用新案登錄은 무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고안은 그 技術內容 작용효과가 공지공용의 고안이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을

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그 맷는 말에 본건 實用新案法 第5條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위배되어 登錄된 것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는 請求인의 주장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請求인의 請求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나 일견기록에 펼쳐되어 있는 자료등에 의하면 이 사건 實用新案登錄의 고안은 주로 하절기에 의자위에 깔아놓고 방석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편목을 끈으로서 연결하는 주연편목을 개량하여 끈의 외부노출이 없고 주연 편목이 절단 절취등 파손되지 않도록 한 목편으로 구성한 방석의 매듭용 개량 주연편목에 관한 것으로 그 實用新案의 명칭이나 그 설명자체가 이미 종전 시행되던 기술내용등을 개량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審判請求인이 인용한 고안이 조열식 미장 나무방석(피나무 또는 버드나무등과 같은 양질의 활엽수를 써서 만든 조열식 나무방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대비 심리하여 이 사건 고안이 위 法 第5條第2項에 해당하는 것인

가를 심리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原審決에는 필경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자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原審決을 破棄하여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환송하기로 판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秦) 「특허 · 실용신안색인집」(內)◆
발간에 따른 수요측정

본회는 지난 1948년부터 1978년까지의 특허 · 실용신안 색인집 발간에 이어 1979년부터 1983년까지 5년간의 특허 · 실용신안 공고분에 대한 출원인별, 분류별(IPC), 공고번호별 색인집을 다음과 같이 발간코자 하오니 필요량을 기입하셔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체 제 : 국배판

지 질 : 표지 하드카바, 내지 모조 80g

인 쇄 : 표지 금박인쇄, 내지 청타 8p 마스타

예상면수 : 1,620면 (1권 당 540면)

1면당 수록건수 : 45건 기준

총수록건수 : 24,188건

발간물종류 : 특허 · 실용신안공고번호별색인 (1979년~1983년)

〃 출원인별색인 (〃)

〃 분류별(IPC)색인(〃)

가 격 : 1질 당(3권) 70,000~80,000원

(단, 가격은 수요측정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조사부

(13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중앙종묘빌딩 7층)